의안번호	2557

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8.
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. 11. 17.

나. 제 출 자: **박남희 의원 등 10명**

다. 회부일자: 2023. 11. 22.

라. 상정일자: **제296회**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(2023. 11. 28. 상정・심사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박남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(2023. 8. 30.)으로 선물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가 상향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선물 등의 가액 범위 확대(별표1)

현행	・ 물품: 5만원 다만,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: 10만원(설날·추석 20만원)
개정	・ 물품, **상품권(물품·용역상품권)**: 5만원 다만,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, **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: 15만원** (설날·추석 **30만원**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류원주)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,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2023. 8. 30.)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검토결과,

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: 생략

5. **토론요지**: 특이사항 없음

6. **소수의견**: 특이사항 없음

7. **심사결과**: 원안가결